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6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60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소3799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0. 11. 18.

판결 선고 2020. 12. 1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소379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4. 8. 손자(C)의 분노조절장애 치유를 위해 무속인인 피고에게 기도의식에 필요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9. 4. 29.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권준범

판사에혁준

판사김대규